

第10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監査請求에 관한條例(案)審查報告書 .....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 11面  
 4.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審查報告書 ..... 19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2000. 5.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2000. 5. 2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일선행정 보조자인 통·반장을 통해 각종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여 정  
 확한 고지서 송달과 송달 비용절감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의 통·반장  
 임무조항에 고지서 송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협약에 의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7조제1항)
- 통·반장 임무중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제1항제10호)

다. 개정근거

-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2000. 3. 22 구청장 방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현재 동직원을 통하여 교부하던 각종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통·반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협약에 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단서)
- 통·반장의 임무에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0호)

다. 고지서 송달방안별 비교 검토

송달 방안	장 점	단 점
통·반장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송달에 비하여 예산절감</li> <li>• 신속 정확한 송달과 책임 송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지서 통별, 관의분 분류, 보상금 지급조서 작성관리 등 행정의 비능률 초래</li> <li>• 일부 통장이 비협조적일 경우 체계적 통제 곤란</li> </ul>
등기우편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달 근거 확보로 민원 발생 예방</li> <li>• 행정능률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과다 소요(지방세의 경우 5억 6,400만원)</li> <li>• 고지서 송달률 저조 및 반송료 부담 (반송률 평균 20% 예상)</li> </ul>

라. 타구의 사례

- 성동구 : 조례 개정('99.10.16)하여 시행 중 - 보상금 : 1건당 340원
- 강남구 :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시행 중 - 보상금 : 1건당 200원 (500원으로 인상 예정)

마. 검토의견

- 현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이 동기능 전환시에는 불가능하

여집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인 바

○ 지방세, 부담금, 점용료 등 세입 내용별 송달방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개별 조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성동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현행법상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동직원을 통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등기송달(1건당 1,170원)을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 통·반장이 비협조적일 경우 정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지방세 등기우송료 추정액('99년도 건수기준) : 564백만원

- 정기본 고지 : 401,938건 × 1,170원 = 470,267,460원

- 반송분 재고지 : 80,387건 × 1,170원 = 94,052,790원

바.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납입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통·반장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이동규 위원, 정태순 위원, 박종식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총무과장 이동명)

문) 지금 현재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제2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을 각 호별로 살펴보면 사실 통장의 나이제한이 없어 현재 통장 중에는 60세 이상된 사람도 많고 심지어 80세가 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장이 고령화 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5

조제2항제3호를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4·13 총선 후 통장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통장 경합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통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장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각 동에 공문은 시달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편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입니다.

문)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기준은 어떠하며, 송달에 따른 책임문제 발생은 없겠습니까?

답)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1매당 340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며, 고지서 송달문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므로 송달결과도 명확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지서 송달에 있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

2000. 5.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2000. 5. 2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김 주 회)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주민감사청구제 신설에 따라('99. 8. 31),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안 제2조)
  -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20세이상 700인으로 함
- 시행규칙(안 제3조)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서울시 민조13400-291, 2000. 3. 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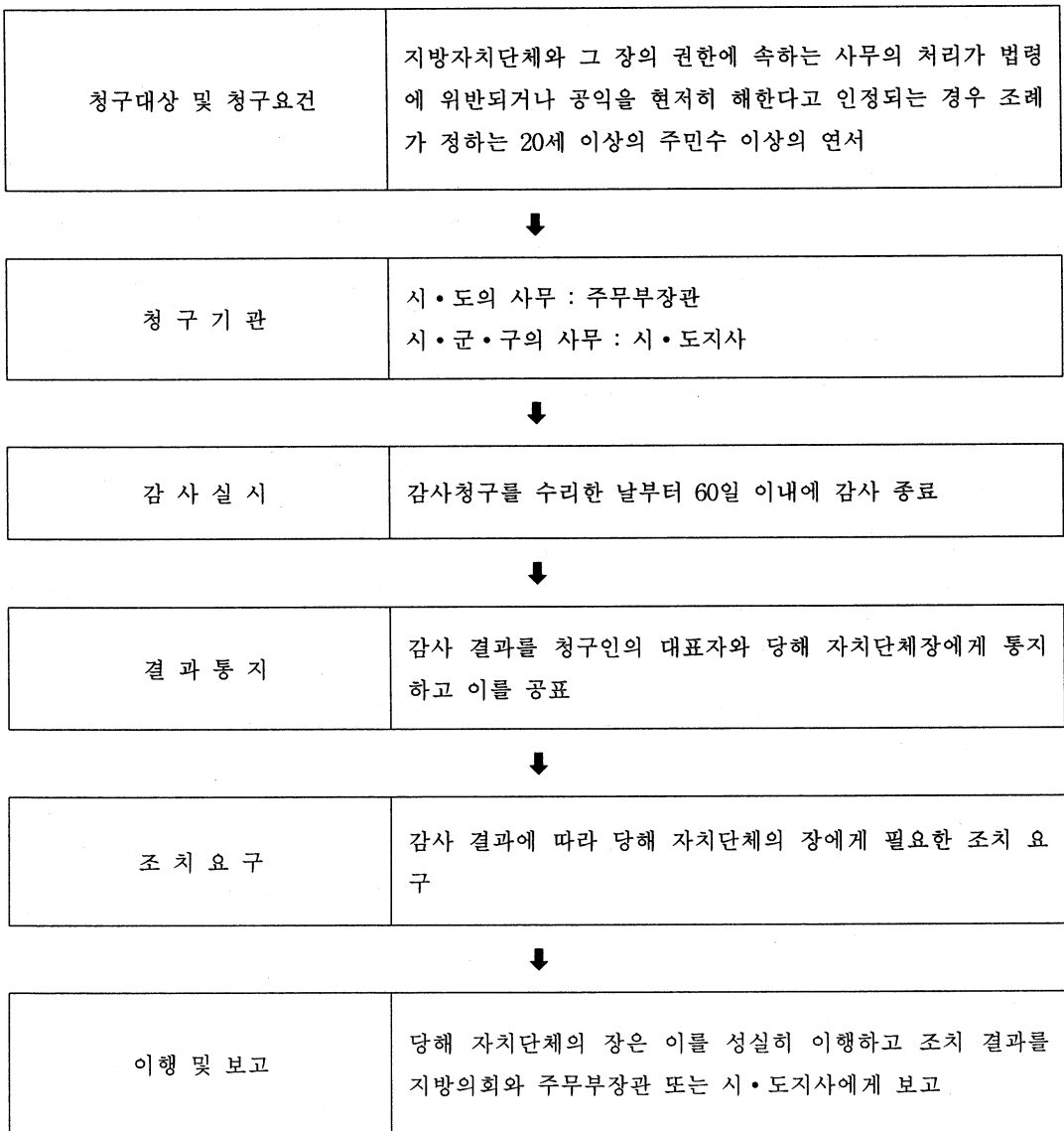
가.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99.8.31)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신설되고 감사청구시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임

나. 주요 골자

○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700인으로 함 (안 제2조)

다. 주민감사청구 절차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라. 구별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 추진현황

2000.5.15 현재

구 별	청구인수	20세이상 주민수 비율	추진현황	비 고
종 로 구	700	1 / 202	의회계류 중	
중 구	500	1 / 194	의회계류 중	
용 산 구	500	1 / 364	공 포	
성 동 구	1,000	1 / 251	의회계류 중	
광 진 구	700	1 / 404	공포 예정	
동대문구	700	1 / 394	공포 예정	
중 랑 구	200	1 / 1,645	공포 예정	700→200
성 북 구	700	1 / 505	공포 예정	1,000→700
강 북 구	500	1 / 526	공포 예정	
도 봉 구	600	1 / 439	의회계류 중	
노 원 구	1,000	1 / 428	의회계류 중	
은 평 구	700	1 / 492	의회계류 중	
서대문구	700	1 / 392	의회계류 중	
마 포 구	700	1 / 416	공 포	
양 천 구	700	1 / 478	의회계류 중	
강 서 구	700	1 / 525	의회계류 중	
구 로 구	700	1 / 409	의회계류 중	
금 천 구	700	1 / 275	공 포	
영등포구	500	1 / 596	의회계류 중	
동 작 구	1,000	1 / 313	공 포	700→1,000
관 악 구	1,000	1 / 388	공 포	700→1,000
서 초 구	700	1 / 427	의회계류 중	
강 남 구	800	1 / 509	의회 미상정	
송 파 구	700	1 / 675	공 포	
강 동 구	300	1 / 1,145	공포 예정	700→300

## 마.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신설에 따라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감사를 청구할 주민의 수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2000년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 14만 1,544명의 50분의 1인 2,830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안 제2조에서 700인으로 하였는 바

- 연서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민의 행정감시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남용되어 행정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700인이 적정한 규모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안 제2조 후단에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법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 중 식 위원, 안 재 홍 위원, 이 동 규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감사담당관 김 주 회)

문) 주민감사청구시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 감사를 청구한 기관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구청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시장에게 청구하게 되고,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시장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문)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은 주민참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도 외향적 목표는 많이 달성하

였으나, 아직까지 규제도 많아 실질적 변화는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은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700명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300명~400명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감사청구 주민수가 너무 많으면 주민감사 청구가 쉽지 않아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해되며, 너무 적으면 주민감사청구가 많아져 수감을 위한 행정낭비가 우려되는 장단점이 있어 연구 끝에 최선을 기울여 적정선인 700명을 정한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안재홍 위원 수정안 동의

○제2조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6. 審 査 結 果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0. 5. 23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제2조 후단에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연서 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주민의 행정감시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남용되어 행정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수정

2. 수정골자

- 제2조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 3. 서울特別市鑛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2000. 5.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2000. 5. 2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 가.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세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동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른 고지서를 통·반장이 송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방침이 있어 종로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개정(안 제6조의2)
- 구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심의·의결토록 되어있는 사항에 심사청구를 삭제(안 제14조)
-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신설(안 제14조의3)
- 고지서를 통·반장이 송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신설

##### 다. 개정근거

- 자치구세조례개정(안) 구세부과징수규칙개정(안) 통보(서울특별시 세정13400-369(2000. 4. 1))
- 구청장 방침 2000-320(2000. 3. 22)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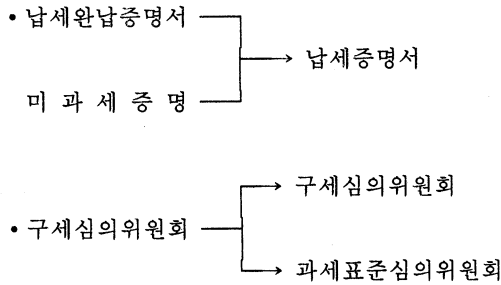
가. 개정 이유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방법을 현재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으나 이를 통·반장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전달 보상을 별도 지급토록 하는 제도 개선적 개정과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준칙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개정 골자

○제도 개선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등기우편 송달 → 통·반장 호별방문 교부, 송달비용 보상금 지급

○상위법 개정



다. 개정(안)별 검토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안

< 교부대상 고지세 현황 >

구 분	세 목 별	납 기	교 부 건 수 (건)		
			계	정기분	독촉분
구 세	면 허 세	1월	79,828	64,714	15,114
	재 산 세	6월	55,822	51,456	4,366
	종합토지세	10월	47,381	43,260	4,121
시 세	주 민 세	8월	109,772	87,924	21,848
	자동차세 1기	6월	52,171	44,151	8,020
	자동차세 2기	12월	52,964	44,743	8,221
소 계			397,938	336,248	61,690
무악동 현대아파트입주증가 예상			4,000		
총 계			401,938		

※ 시세 고지서를 구에서 송달하는 근거 - 지방세법 제53조

①시·군·구는 그 관내의 특별시·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도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3안 채택

구분	송달방법	소요예산	문제점 및 개선 효과
1안	등기우편	5억 6,400만원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주간에는 등기수취인이 없는 관계로 송달률이 80%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하여 반송, 재송달 등 행정적, 재정적 추가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장기적 대처 방안이 요구됨
2안	일반우편	1억 8,500만원 (10만원 이상 등기 10만원 미만 일반)	고지서 전달 입증책임이 구에 있어 일반우편 송달시 배달입증책임 확보가 어려워 체납시 가산금 처리 문제가 발생됨
3안	통장교부	1억 3,600만원 (1건당 일반우편 요금의 2배)	야간 송달 등으로 송달률은 제고될 수 있으나 통장조직의 안정성이나 구성원의 사명감,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송달사고의 우려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비한 조치로 구청장과 통장간에 약정서를 체결하여 책임송달방안과 송달보상금에 대하여 협약 체결 계획

< 통장교부약정서 내용 >

- 송달대상 세목 : 지방세 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포함
- 송달보상금
  - └ 금액 : 일반우편요금의 2배 (연동)
  - └ 지급 : 송달 후 청구에 의거 온라인 송금
- 의무 및 책임
  - 조례 통과 후 통장회장단과 간담회
  - 구청장과 개별 통장 간에 약정 체결
  - 고지서는 송달부에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3일내 교부
  - 송달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시 변상 책임
- 경과조치
  - 6월 송달분(재산세, 자동차세 1기)은 명륜3가와 승인1동 시범 실시

< 타구의 사례 >

- 성동구, 강남구 2개 구 통·반장 교부제 시행
- 보상금 1건당
  - └ 성동구 : 340원
  - └ 강남구 : 200원 (500원으로 인상 예정)
- 근거규정
  - └ 성동구 : 조례에 근거
  - └ 강남구 : 구청장 방침

○서초구, 중구는 등기, 일반우편제 겸용 시행 검토

< 동별 통당 세대수 현황 >

'99.12.31 현재

동 별	통수	세대수	통당평균세대수	동 별	통수	세대수	통당평균세대수
청운동	11	1,984	180	종로5.6가동	22	3,060	139
효자동	16	4,268	266	이화동	19	4,427	233
사직동	27	3,718	137	혜화동	15	4,748	316
삼청동	11	2,124	193	명륜3가동	12	3,413	284
부암동	19	4,619	243	창신1동	20	3,539	176
평창동	18	6,382	354	창신2동	33	4,892	148
무악동	13	2,169	166	창신3동	17	3,319	195
교남동	17	3,673	216	승인1동	16	3,052	190
가회동	12	2,771	230	승인2동	22	3,587	163
종로1.2.3.4 가동	38	3,836	100	계	358	69,581	194

※ 구 주택보급률 72.76%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

< 조례(안) 제6조의2 > 납세증명서의 발급

○미과세 증명 + 납세완납증명 → 납세증명서

○개정 근거

- 지방세법 제39조 : 미과세증명서 발급규정 전문 삭제('99.12.28)
- 지방세법 제38조제2항 : 납세증명서 발급규정 신설

< 조례(안) 제14조 >

○현재 구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 구세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등 심의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과세표준기준 등 심의

○2개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 구성 요건은 동일함

○위 원 수 : 15인 이하

○위원임기 : 2년

○근거법규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라. 검토의견

○납세증명서와 구세심의위원회 개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방법 개선안은 맞벌이가정의 증가 추세와 동기능 전환으로 동직원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종전의 통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최종책임 부여가 가능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 통장이 전달하게 될 경우 보상금 수령 예상금액은 현재 구 전체 통당 1개 평균세대가 194세대이고 주택보급률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고지서 전달건수가 통당 평균 150건(주민세 제외) 정도로 예상되어 1회에 5~6만원 정도의 송달보상금이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년 30~40만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제13조의2 신설 단서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수당은 보상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종로구통·반설치조례에서 통장에게 고지서 송달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운영규정에서도 보상금 표현이 타당함

####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김 복 동 위원, 오 금 남 위원, 최 강 순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세무1과장 조 조 익, 세무2과장 박 승 년)

문) 각종 고지서를 통·반장에게 송달하게 할 경우 공무원처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까?

답) 통·반장 중에서 부여된 임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송달할 수 없기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간담회나 교육을 통하여 의무감을 조성할 것이며, 보상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문) 시민행정위원회에 상정 중인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습니까?

답)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에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은 추가사항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조례에서 위임받아 별도의 규칙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문) 반장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답) 통장이 결원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통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문) 우리 구의 교부대상 지방세 고지서는 얼마나 됩니까?

답) 구세와 시세를 합쳐 40만건 정도로 세목에 따라 6회에 걸쳐 송달됩니다.

문) 우리 구의 예상 송달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통장이 교부하는 (안)으로 송달보상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배인 1건당 340원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문) 이 조례(안)의 13조의2 신설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며,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 보상금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최 강 순 위원 수정(안) 동의

○ 제13조의2 단서규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6.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수정(안) 별 첨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2000. 5. 23

발 의 자: 재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제13조의 2 신설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당은 평균액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운영규정에서도 보상금 표현이 타당하므로 수정되어야 함

2. 수정골자

○ 제13조의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4.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2000. 5. 2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2차(2000. 5. 24)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제안이유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현안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 산			금회추결	증가율 (%)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156,715,785	148,711,244	145,796,190	2,915,054	8,008,541	5.5
일 반 회 계	119,703,652	114,215,020	111,421,101	2,793,919	5,488,632	4.9
특 별 회 계	37,016,133	34,496,224	34,375,089	121,135	2,519,909	7.3
의료보호기금	3,315,246	3,314,523	3,314,523	-	723	-
주 차 장	33,700,887	31,181,701	31,060,566	121,135	2,519,186	8.1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세입 개요

< 총예산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	추 가 경 정		추경예산(안)	증가율(%)
		간주처리	금회추경		
합 계	145,796,190	2,915,054	8,008,541	156,719,785	5.5
일반회계	111,421,101	2,793,919	5,488,632	119,703,652	4.9
특별회계	34,375,089	121,135	2,519,909	37,016,133	7.3

< 추경재원 >

(단위:천원)

구 분	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환금	기타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조정교부금
계	8,008,541	7,885,228	350,384	180,889	-407,960
일반회계	5,488,632	5,422,162	293,541	180,889	-407,960
특별회계	2,519,909	2,463,066	56,843		

< 세입된 간주처리 내용 >

(단위:천원)

(공란)

회계별	일 자	목	사 업 내 용	배정액(간주액)	비고
총 계	총 계			2,915,054	
	일반회계			2,793,919	
	특별회계			121,135	
일반회계	소 계			2,793,919	
	1. 13	조정교부금	청소년 특별종합대책	78,840	
	1. 26	조정교부금	어린이공원 재정비	88,888	
	2. 2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14,726	
	3. 17	조정교부금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94,890	
		국고보조금	행정전산화 확산사업	119,657	
	4. 12	조정교부금	도로보수 등	1,768,976	
		국고보조금	국유재산 관리 보조	85,783	
		시비보조금	시유재산 관리	37,940	
	5. 10	조정교부금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46,479	
		국고보조금	문화재 보수	342,000	
		시비보조금	지역특성문화 사업비	115,740	
특별회계	소 계			121,135	
	4. 12	시비보조금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121,135	

나. 세출 내용

< 일반회계 재원 배분 >

(단위:천원)

합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지방채상환
	소 계	범정경비	운영비		
5,488,632	1,795,819 (33%)	1,348,340	447,479	2,692,813 (49%)	1,000,000 (18%)

< 특별회계 재원 배분 >

(단위:천원)

구 분	계	보조금 반환	적 립 금	비 고
계	2,519,909	56,843	2,463,066	
의료보호기금	723	723		
주 차 장	2,519,186	56,120	2,463,066	

<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천원)

위 원 회 별	추경예산액	점유율(%)	비 고
계	5,488,632	100	
운 영 위 원 회	105,000	2	
시민행정위원회	4,372,458	79 <sup>b</sup>	
재무건설위원회	1,011,174	18 <sup>a</sup>	

다.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금번 추경재원 54억 8,863만 2,000원은 순세제잉여금 추가발생분 54억 2,216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9,354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수입 추가편성분 등이 증가 요인이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내시후 세입결손으로 4억 796만원 감액되었음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편성 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음
- 83쪽~84쪽 종로지역 사회지표 책자발간 및 개발용역비로 1,500만원과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주거, 환경, 문화, 교육 등 구정에 대해 주민이 바라는 행정 욕구를 파악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84쪽 정부재투자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연리7.25%) 조건으로 차입한 50억원을 당초 2005년부터 상환기로 하였으나 이중 10억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것인 바 이자부담 경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잔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상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 차입금 현황

(단위:백만원)

차입기관별	차입액	상환조건	이 율	차입일	상환기간 (원금)	원금상환 액(년)
합 계	9,000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 금	4,000	2년거치 3년균분	연리 7% (시보조 3% 구 4%)	'98.12.21	2001~2003	1,330
재경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5,000	5년거치 10년균분	당초 6.5% 현재 7.25% ( '99년4/4분기부터)	'99. 5.31	2005~2014	500

○'99년말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시비보조금 5억원을 수령, 예산편성 절차상 관계로 필운-신교동간 도로공사에 간주처리로 편입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 5억원을 감액 결정하여 88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72만 3,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이를 이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세계잉여금 24억 6,30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적립금이 239억 3,079만 8,000원에 이르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시행이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천상욱 위원, 오필근 위원, 이현구 위원, 안재홍 위원, 정병환 위원, 선상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오종석, 의회사무국장 황의진, 민원봉사과장 임성규)

문) 동묘공원화장실 증·개축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ASEM 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빌딩에 있는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화장실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묘공원 내 화장실은 8평 규모로 '75년도에 건립되었으나 낡고 비좁아 15평으로 증·개축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유아보호기·기저귀보호대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 꽃묘구입비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꽃묘 설치지역은 어디이며,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화분농기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답) 꽃묘 식재지역은 종각녹지대 등 9개소, 가로화분 117개소이며 4회에 걸쳐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화분농기 사업을 하는 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절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소규모사업비로 기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현재 보안등은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보안등 유지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구에서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최소비용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 무악동 지하수는 '94년도에 개발하여 '96년도에 수질부적합으로 폐쇄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700만원을 들여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적합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금번 우기가 지나고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때도 적합판정이 나오게 되면 지하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 「'99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을 꼭 민원실 종합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야만 합니까?

답) 민원행정분야는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방문이 많기 때문에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시에서 받은 시상금을 민원실 종합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안재홍 위원 수정안 동의

6. 審 査 結 果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의원들의 민원처리용 오토바이 구입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관용차량관리규정의 하위규범인 시행규칙, 시 지침·타구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관리문제(유지비, 보험료) 등으로 반대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김현식 행정관리국장은 안재홍 위원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서

- 구의회 “민원처리용 오토바이 구입비” 1,900만원은 「부동의」 하였으며,
- 사회복지과의 “종묘공원 경로급식지원” 2,000만원은 「종묘공원」을 「순회」로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 기타 다른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 함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

【豫算 特別委員會】

□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별초예산액	수정예산		수정예산액	품목	비고
	세항	세세항목(세목)			감액	증액			
* 예산 특별위원회 합계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원행정서비스 ISO인증 수수료	980,200	278,600	278,600	980,200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용역	6,000				83
총무과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청사화장실 보수공사	20,000				84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소 계 (민원실환경개선)	176,000			76,000	86
				- 인테리어 공사	238,200			132,600	88
				- 기본조사 및 설계비	220,000			120,000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묘공원화장실증개축	18,200			12,600	
				무악동 지하수공동시설경비	150,000			120,000	117
구의회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카메라구입비	30,000			13,000	들산약수터로 부기수정
				민원처리용 오토바이구입비	-		3,000	3,000	
총무과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삼청동사무소 도시가스 설치공사	-		19,000	19,000	부동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결식아동 토·공휴일 증식비	-		37,240	37,240	
			민간이건	중묘공원 경로급식지원	-		20,000	20,000	조건부동의 (중묘공원) 순회 로 부기조정
토목과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송인동411-431간 도로공사	360,000		180,360	540,360	121

